



-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-
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



- ◆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'15.1.22.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하지 않고, 주민등록관서(읍·면·동)에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.
- ◆ 현재 거소신고증을 소지하고 있는 재외국민은 '16.7.1.부터 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주민등록관서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2016. 3. 15(화)

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

① 이미 발급받은 국내거소신고증은 어떻게 되나요?

- '15.1.22.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을 더 이상 발급하지 않습니다.
- '15.1.22. 전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'16.6.30.까지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.
- '16.7.1.부터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은 상실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②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란?

-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(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자 포함)했거나 '15.1.22.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, "재외국민"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.

③ 재외국민 주민등록 어떻게 달라지나요?

-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.
- 해외이주신고만으로도 국외이주신고가 자동 처리되어 편리해집니다.
- 주민등록신고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국내에서 생활하면 됩니다.

④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?

-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이 된 적이 없었던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주민등록관서(읍·면·동)에 주민등록을 신고하면 됩니다.
- 국내에서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에는 읍·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합니다.

⑤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주민등록이 된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이면 누구나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읍·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고나 국외이주신고 후에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.

⑥ 재외국민 주민등록 무엇이 좋아지나요?

- 주민등록증을 통한 신분확인이 쉬워지며, 금융 및 부동산 거래 등 경제활동이 편리해 집니다.

※ 기타 궁금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콜센터(☎ 02-2100-3399) 또는 주민등록관서(읍·면·동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